



화성시 추모공원 이용안내

봉안자격 및 범위

• 관내 (화성시 거주자)

-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
- 화성시 지역 내 묘지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 후 봉안하는 경우

• 관외 (화성시 외 거주자)

- 사망일 기준 등록기준지(본적)가 화성시인 경우
-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직계 존비속배우자가 화성시 지역 외에서 사망 또는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

참고사항

직계존속 : 부모, 조부모, 증조부모, 고조부모/외조부모, 외증조부모, 외고조부모
 직계비속 : 아들, 딸, 손자, 손녀, 증손자녀, 고손자녀

이용시간 및 제례실 이용안내

- 이용시간 : 09:00~18:00 연중무휴
- 제례실 이용안내

구분	주요내용
위치	추모공원 실내 봉안당 1층 입구 오른쪽 3개 호실 (국화실/백합실/매화실)
이용시간	09:00~18:00 연중무휴이며, 설날, 추석 등 성묘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이용요금	제례실 이용은 무료이며, 제례실에 비치되어 있는 제기 등 제례용품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영상기기	기일, 추모일에 영정사진 등을 휴대전화에 담아오시면 제례실 내 모니터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.
기타사항	제례실에서는 제수용품을 준비하여 고인에게 제례를 지낼 수 있으며, 가지고 오신 제수용품, 산복 및 음식물은 반드시 되가져 가서

신청시 구비서류 I

최초 봉안		
구분	봉안자격	구비서류
관내	고인기준 화성시 거주 1년 이상	· (고인기준)주민등록초본 · 화장증명서 · 사용자신분증
관외	고인의 등록기준지가 화성인 경우	· (고인기준)등록기준지 확인서류 - 기본증명서 혹은 제적등본 · 화장증명서 · 사용자 신분증
	직계 존, 비속 및 배우자가 1년 이상 화성시 거주	· (화성시 거주 직계 존, 비속 및 배우자의) 주민등록초본 · 가족관계증명서 · 화장증명서 · 사용자 신분증
부부단 합장		
관내	고인기준 화성시 거주 1년 이상	· (고인기준)주민등록초본 · (고인기준)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· 화장증명서 · 사용자신분증
관외	최초 안치 시	· (고인기준)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· 화장증명서 · 사용자신분증
	개장 후 합장 시	· (고인기준)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· 개장증명서 · 화장증명서 · 사용자신분증

안치절차



※ 안치단 결정 후 안치순서는 접수 순 (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)

※ 최초 안치 후 추모공원 내 안치장소 이동 및 개인단-부부단 변경 불가

※ 안치기간

- 일반 : 최초 1년 1년 단위 1회 연장가능(총 30년)

신청시 구비서류 II

묘지의 개장/이장		
구분	봉안자격	구비서류
관내	화성시 지역 내 묘지 개장 후 화장	· 개장증명서 - 공설묘지 개장 시 공설묘지 증명 · 화장증명서 · 사용자신분증
관외	직계 존, 비속 및 배우자가 1년 이상 화성시 거주	· (화성시 거주 직계 존, 비속 및 배우자의) 주민등록초본 · (고인기준)가족관계증명서 또는 : · 개장증명서 · 화장증명서 · 사용자신분증
타 시설에서의 이전 봉안		
관내	직계 존, 비속 및 배우자가 1년 이상 화성시 거주	· (1년 이상 화성시 거주 직계 존, 비 배우자의) 주민등록초본 · (고인기준)가족관계증명서 또는 : · 유골반환증명서 · 사용자 신분증
관외		

- 주민등록초본은 "상세주소" 기준으로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혼인관계증명서는 "고인기준"으로 발급된 증명서
- 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묘지의 개장 후 추모공원 안치 시 화장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봉안비용

• 실내 봉안당 (1구당)

구분	관내적용	관외적용
개인단	500,000원	1,000,000원
부부단	750,000원	1,500,000원

• 야외 평장묘(신청불가) (1구당)

구분	관내적용	관외적용
개인단	650,000원	1,300,000원
부부단	975,000원	1,950,000원

※ 야외 평장묘는 만장되어 개인단 유골자 외 신규신청 불가(2013년 2월 9일 기준)

※ 감면대상 : 국가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, 관내공설묘지 이장 (단, 감면증빙서류 필수 제출/관내는 전액감면, 관외는 50%감면)
 관내 다자녀 가정 50%감면

※ 감면증빙서류 : [국가보훈대상자] 국가유공자 증명서
 [기초생활수급자]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